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범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하 “회사”라 한다)이 주주와 예금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사회와 구성과 운영 등과 관련한 원칙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시) ① 회사는 이 규범을 제정·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매년 이 규범에 따른 이사회 등을 운영한 현황에 대한 보고서(이하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일전부터 공시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의 구체적인 항목 및 방법을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이 정하는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는 회사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공시 및 그 공시에 관한 세부기준은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 03. 28.>

제2장 이사회와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사의 사외이사의 수는 전체 이사 수의 과반수이어야 한다.

제4조(자격요건)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사가 되지 못한다.

1.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그 밖에 이사회가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등 관련 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나 지식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외이사가 되지 못한다.

1.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그 밖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로써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사외이사는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전문경영인(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
2. 정규대학 교수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
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인 자
4. 최근 10년 내에 5년 이상 금융기관 종사자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자

제5조(이사의 권한과 책임) ①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배하거나 임무를 소홀히 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6조(이사회회의 소집) ① 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하며, 일시와 장소는 의장이 정한다.

② 임시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7조(소집통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을 정하고 소집목적, 일시, 장소를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이사회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모사전송, 전보,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컴퓨터 통신,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사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소집권자 및 의장) ① 이사회 의장은 매년 이사회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하며, 의장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선임사외이사) 전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사외이사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이사회는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사외이사”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이사회 의장, 회사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
3. 그 밖에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 제고에 필요한 업무

제10조(결의사항) ① 다음 사항은 이사회에 부의하여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주주총회 관련 사항
 - 1) 주주총회 소집 및 안건의 결정
 - 2)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
 - 3) 배당규모와 방법의 결정
 -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일반경영 관련 사항
 -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 종합업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3) 예산(이사 및 직원의 보수를 포함) 및 결산에 관한 사항<개정 2017. 03. 28.>
- 4) <삭제 2017. 03. 28.>
- 5) <삭제 2017. 03. 28.>
- 6) [별표2]의 기준에 따른 중요한 계약, 소송, 중요한 차입 및 자기자본의 일정비율 이상 고정자산의 매입 또는 투자 등<개정 2017. 03. 28.>
- 7) 대출운용기준 등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 8)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3. 조직 및 임원 관련 사항

- 1) 주요 규정 · 기준의 제·개정 또는 폐지([별표1]에 따름)
- 2) <삭제 2017. 03. 28.>
- 3) 상법 397조 및 398조에 의한 이사의 경업거래, 겸직 회사의 사업기회 및 자산의 유용에 대한 승인 및 자기거래 승인<개정 2017. 03. 28.>
- 4)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상근이사, 비상근이사 등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5) 이사회내 위원회(감사위원회를 제외한다) 위원 선임 및 해임
- 6) 주주총회에서 위임한 이사의 보수 기타 보상의 결정
- 7) 회사의 지배구조 정책 및 원칙 전반에 관한 사항
- 8)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9)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 10) 대주주·임원 등과 저축은행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대한 사항

4. 자본조달 및 자본금 관련 사항

- 1) 주식 및 채권(사채포함)의 발행 결정
- 2) 자본금 변경, 제준비금 자본전입
- 3) 신주발행, 주금의 납입 및 준비금, 잉여금, 적립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사항
- 4) 자산 재평가

5. 기타사항

- 1)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취소
- 2)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사항
- 3)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및 해임
- 4) 준법감시인 선임 및 해임
- 5) 본점의 이전, 지점(출장소) 설치, 이전 및 폐지
- 6)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개정 2017. 03. 28.>
- 7) 자회사의 설립(인수) 및 매각
- 8) 주주총회 위임사항
- 9) 불량채권의 상각에 관한 사항(1억원 이상)
- 10)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 11)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 12) 기타 상법, 정관에 규정한 사항과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13) 위험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②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종합적인 경영분석 보고
2. 다른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정한 사항
3. 기타 이사회 및 대표이사가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표이사가 정하도록 위임한다.

1. 지배인 선임·해임
2. 지점(출장소, 여신전문출장소를 포함한다)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본항 신설 2017. 2. 21.]

제11조(결의방법) ① 이사의 결의는 정관에 규정된 방법에 따른다.

② 이사의 결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견을 진술할 수는 있으나 그 결의에 참가할 수 없다.

제12조(이사 선임의 기준 및 절차)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사외이사, 대표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할 수 있다.

③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이거나 사외이사이었던 자를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려는 경우, 그 재임기간 동안의 사외이사 평가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조(이사 퇴임사유 및 절차) ① 이사의 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기가 만료된 경우
2. 본인이 사임하는 경우
3. 관련 법률, 정관 등에서 정한 퇴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의결된 경우

② 이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제3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사록의 작성보존) 이사의 의사진행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출석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회사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위임) ① 이사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정관 또는 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과 집행의 권한을 위임한다.

② 대표이사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소관업무 담당 임원 또는 실·본부장에게 당해 사항의 집행을 위임하거나 대행시킬 수 있다.

③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지정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대표이사가 지정한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6조(운영실적 등의 평가) ① 이사회는 그 활동내역을 기초로 주기적으로 이사회 운영 및 사외이사 활동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외이사의 연간 활동에 대한 평가는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평가는 자기평가, 회사평가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7조(이사회 내 위원회의 종류 및 구성)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이사회내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위험관리위원회
4. 보수위원회

②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의결은 그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이 규범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대표(이하 "위원장"이라 한다)는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합리적인 판단력과 추진력을 갖춘 자로서,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⑤ 이 규범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각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및 소집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이사회 내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대표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를 추천한다.

③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개최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을 경우에는 그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의결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19조(감사위원회) ①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 중 1명 이상은 지배구조법 시행령이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1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 후보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이 경우 제17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 ⑤ 감사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이 경우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시 의결권 행사의 제한에 관하여 지배구조법 제19조 제6항 후단 및 제7항을 적용한다.
- 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경영성과를 평가·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관계자의 출석·답변 등을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이 경우 그 역할 및 권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 ⑦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감사위원회규정에 따라 개최한다.

제20조(위험관리위원회) ① 위험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 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 결정
 3.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4.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
 5. 위험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6.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험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험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험관리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위험관리위원회규정에 따라 개최한다.

제21조(보수위원회) ① 보수위원회는 지배구조법이 정하는 임직원에 대한 보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2.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3.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보수체계와 관련된 사항
- ② 보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보수위원회 규정에 따라 개최한다.

제22조(운영실적 등의 평가) ① 이사회는 이사회내 위원회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주기적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내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에 참고한다. 이사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 재선임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4장 임원에 관한 사항

제1절 임원의 자격요건

제23조(임원별 자격요건) ① 이사, 사외이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제4조를 적용한다.

- ② 준법감시인은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 ③ 위험관리책임자는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및 제28조 제3항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 ④ 주요업무집행책임자 및 업무집행책임자는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 ⑤ 회사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2절 임원의 권한·책임

제24조(이사 등의 권한과 책임) ① 회사는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출한다.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며 회사의 업무를 분장·집행할 수 있다.

제25조(준법감시인의 권한과 책임) ① 준법감시인은 회사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 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② 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준법감시인의 권한과 책임에 관하여는 법령 및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6조(위험관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① 위험관리책임자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위험관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에 관하여는 법령 및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절 임원의 선임·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27조(임원의 선임) ① 대표이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이사회 의결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적용한다.

③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 의결로 선임한다.

④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이사회 의결로 선임한다.

⑤ 업무집행책임자는 회사의 내규 등에 따라 대표이사가 선임한다.

제28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적용한다.

②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기는 이사회 의결로 정하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④ 업무집행책임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하여는 내규 등으로 따로 정한다.

제29조(임원의 퇴임) ① 이사 퇴임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적용한다.

- ② 대표이사는 이사회 의결로 해임하고,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이사회가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 되, 동일 순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선임자(선임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 다.
- ③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제1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사유 및 이사회 의결로 해임 의결로 퇴임한다.
- ④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제1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사유 및 이사회 의결로 퇴임한다. 이 경우 해임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⑤ 업무집행책임자의 퇴임은 내규 등으로 따로 정한다.

제4절 임원 및 그 후보자에 대한 교육제도

- 제30조(임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① 회사는 임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 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임원의 경영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회사에서 정한 내부 또는 외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 제31조(임원후보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등)** ① 회사는 사내 임원후보자 중 선발된 인원에 대하여 내부 또는 외부 교육 및 연수과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임원을 선임할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5절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의 방법

- 제32조(임원 성과평가 등)** ① 임원에 대한 평가는 정량적인 평가와 정성적인 평가를 병행하며, 임원의 담당업 무 성과 등에 연동하여 평가할 수 있다.
- ② 임원에 대한 평가결과는 임원의 임면, 보수지급 등에 활용한다.

- 제33조(보수의 지급)** ① 임원(사외이사, 비상임이사,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제외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보수체계에 관하여는 보수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② 임원에 대한 성과급은 평가결과 등에 따르며, 구체적인 사항은 보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임원의 보수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개별 위촉(또는 위임)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제1절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

- 제34조(경영승계 계획 수립 및 변경)** ① 이사회는 관련법령 등에 따라 경영승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는 매년(또는 매 사업연도) 1회 이상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35조(경영승계 절차 개시사유 및 개시결정시기) ① 최고경영자(대표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경영승계 절차(이하 "경영승계 절차"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개시된다.

1. 최고경영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2. 최고경영자의 사임, 해임 또는 최고경영자에게 임원 자격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기타 이사회가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②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결정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임기 만료 30일 전
 2. 제1항 제2호의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직후
 3. 제1항 제3호의 경우 경영승계 절차 개시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있는 때

제36조(경영승계 절차) ① 이사회는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된 시점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이내에 선임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선임 예정자의 중대한 결격사유 발생 또는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선임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그 사유와 선임시까지의 최고경영자 대행자, 회사 운영 및 최고경영자 선임 일정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37조(비상상황 발생시 비상계획) ① 최고경영자가 일시적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로 최고경영자 직무를 대행한다.

② 최고경영자가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사회는 지체없이 직무대행자를 지정하고 비상상황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비상상황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6조의 경영승계 절차에 준하여 절차를 진행하되, 경영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히 완료하여야 한다.

제2절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지원

제38조(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부서) ①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후보군 탐색, 발굴 및 자격검증 등의 관리업무를 담당 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

② 담당 부서는 제1항의 업무 추진 현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최고경영자의 자격

제39조(최고경영자의 최소 자격요건) ① 최고경영자는 관련 법률에서 정한 임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최고경영자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로서, 리더쉽과 경영혁신 마인드 등을 두루 갖춘 자여야 한다. 다만, 최고경영자로서의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절 최고경영자 추천 절차

제40조(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회사,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한 절차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예비후보자가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검증한 후 최고경영자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5절 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제41조(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최고경영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한다.

1.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절차 개요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와의 관계
4. 관련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5.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이유
6.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력

제6절 책임경영체제 확립

제42조(최고경영자의 임기 및 역할 등) ① 최고경영자의 임기는 이사회 의결로 정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최고경영자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③ 최고경영자는 관련법령 및 회사의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43조(최고경영자의 퇴임 및 평가) ① 최고경영자의 퇴임사유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적용한다.

② 최고경영자에 대한 평가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보수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범은 2016년 10월 25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본 규범 중 정관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본 규범 제정 후 첫 주주총회에서 그 사항에 대한 결의가 있을 때 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범은 2017년 2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10조의 개정사항은 2017년 3월 주주총회에서 정관에 대한 결의가 있을 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표1] 이사회 부의대상 주요 규정

1. 정관
2. 감사위원회 규정
3.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4. <삭제 2017. 12. 19.>
5. <삭제 2017. 12. 19.>
6. <삭제 2017. 12. 19.>
7. <삭제 2017. 12. 19.>
8. <삭제 2017. 12. 19.>
9. 노사협의회 규정
10. 준법감시인 직무규정
11. 직제규정
12. <삭제 2017. 12. 19.>
13. <삭제 2017. 12. 19.>
14. 내부회계관리 규정
15. 인사 규정
16. 내부통제기준
17. <삭제 2017. 02. 21.>
18. <삭제 2017. 02. 21.>
19. 보수위원회 규정
20. 위험관리 위원회 규정
21. <삭제 2017. 02. 21.>
22. 위험관리기준
2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신설 2017. 02. 21.>
24. 자금세탁방지업무 규정 중 제4조(이사의 역할 및 책임) <신설 2019. 07. 24>

[별표2] 중요한 자산 평가 기준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8호의 중요한 계약, 소송, 차입 및 고정자산의 매입,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등이란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계약 등을 의미한다. 단,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100억원 보다 작은 경우에는 100억원을 기준으로 한다.